

2022~2023년 이의제기 절차 변경

(상원 법안 188,2022년 법령 제 49장)

변경 사유

리져널센터의 고객, 가족, 옹호자들은 리져널센터와의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렵고 두려우며 공공기관에 대한 이의제기가 일반적이지 않거나 문화적으로 수용되지 않을 때 더욱 그렇게 느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자격 및 서비스 결정을 두고 리져널센터와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의견 제시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많은 가족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법적 대리인이 리져널센터의 대리인과 동등하지 않으며 리져널센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시간이나 재정적 자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경된 내용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법률이 <u>변경</u>되어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마지막 변경 사항은 2023년 3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IPP(개인별 프로그램 계획) 팀과 리져널센터의 의사 결정권자는 서비스 필요성,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 및 그 외 고객이 알고 싶어 하는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리져널센터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NOA라는 조치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합의란 귀하가 IPP, 서비스 목록 또는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기타 사항에 동의하고 서명했음을 의미합니다. 리져널센터는 귀하가 동의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통보하는 "신의 성실 서신(Good Faith Belief Letter)"을 보냅니다.
- 발달장애서비스부(DDS)는 이의제기 절차를 위한 새 <u>웹사이트</u>를 제작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 관련 양식 및 데이터를 게시합니다. 웹사이트의 새로운 정보 패킷에는 전반적 절차, 절차의 각 단계별 수행 방법,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DDS는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는 새로운 이의제기 절차 양식을 제작했습니다. 새로운 이의제기 요청 양식으로 비공식 회의, 중재 또는 청문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후 사용할 옵션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 이의제기 요청은 결정을 내린 리져널센터로 발송되기 전 DDS로 전송됩니다.

- 리져널센터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 아닌 60일입니다.
- 이의제기를 요청한 사람이 변호사이거나 변호사를 동행하지 않는 한, 리져널센터는 비공식 회의, 중재 또는 청문회에서 리져널센터 측 변호사를 동석시킬 수 없습니다.
- 이의제기 요청자의 첫번째 청문회 일정 재조정은 승인됩니다.
- 리져널센터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결정의 이유, 관련 법률 및 관련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의제기자가 이의제기 요청과 관련된 전문가 평가 또는 보고서가 있는 경우 해당 리져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청문회에서 함께 진술할 사람의 명단도 제공해야 합니다.
- 청문회 담당관은 청문회 중 이의제기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모든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 이어서 DDS가 특정 사안에 대한 청문회의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 결정에 법적, 사실적 또는 사무적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역일 기준 15일 이내에 청문회의 최종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리져널센터는 결정 또는 정정된 결정일로부터 역일 기준 30일 이내에 청문회의 최종 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자는 DDS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청문회 사무국(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은 청문회 절차에 대한 개선 가능 사항을 권고하기 위해 <u>자문위원회</u>를 발족했습니다.

DDS 현황

DDS는 앞으로도 자기옹호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다른 변경 사항에 대한 피드백이나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appealsinput@dds.ca.gov로 이메일을 주십시오.